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주시로 이전〉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350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7.

(3) 회 부 일 : 2024. 1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전문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22조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령하고 있음.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헌법이 명령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적 요구로 판단됨.

1894년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3·1운동의 주요한 동인이 되었음. 실제로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에도 참여하였고, 3·1운동의 주요 정신적 토대가 되었음.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적·물적·사상적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헌법재판소가 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규정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소재지) 헌법재판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헌법상 최고사법기관의 하나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하는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심판기관이자 기본권 보호기관이며, 권력통제기관이라 할 수 있음¹⁾.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5일 출범한 후 독립청사를 바로 마련할 수 없어 헌법위원회²⁾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서울 중구 정동 15의5 소재 정동빌딩 내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해 12월 29일부터 서울

1)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헌법재판소의 전신으로, 1980년 제5공화국헌법의 헌법위원회를 말함.

중구 을지로5가 40의3 소재 구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건물을 서울시로부터 대여받아 청사로 사용하였음. 이후 1993년 6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에 위치한 지금의 청사 준공을 완료하는 등 현재까지 그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있음³⁾.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는 그 소재지를 「법원조직법」에서 서울특별시로 규정⁴⁾하고 있는 대법원과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⁵⁾에서 헌법기관 중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는 법률로 규율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임.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적·물적·사상적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헌법재판소가 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청사건립지』, 1994.

4) 「법원조직법」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5) 헌법재판소 2004. 10. 21. 자 2004헌마554결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요구가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2005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통일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음⁶⁾.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이전 및 이전 장소에 관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 헌법재판소 소재의 상징성, 국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성 등 이전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영역으로 사료됨.

다만,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헌법재판소의 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전을 결정할 경우 이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391호, 시행 2005. 5. 19.) 제16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 <2017. 10. 24.>
6. 여성가족부

여 법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OECD 국가들 중 16개 국가는 수도에 헌법재판소가 소재해 있고, 체코, 독일, 슬로바키아 등 3개 국가는 수도가 아닌 도시에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OECD 국가의 헌법재판소 소재지별 분류 >

수도에 헌법재판소가 소재한 국가(16)	수도가 아닌 도시에 헌법재판소가 소재한 국가(3)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헌법위원회),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튀르키예	체코(브르노), 독일(칼스루에), 슬로바키아(코시체) ※ 괄호는 헌법재판소가 소재한 도시명

자료 : 헌법재판소 블로그(<https://blog.naver.com/ccourtkorea>) 세계 헌법재판기관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

한편,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는 내용으로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제983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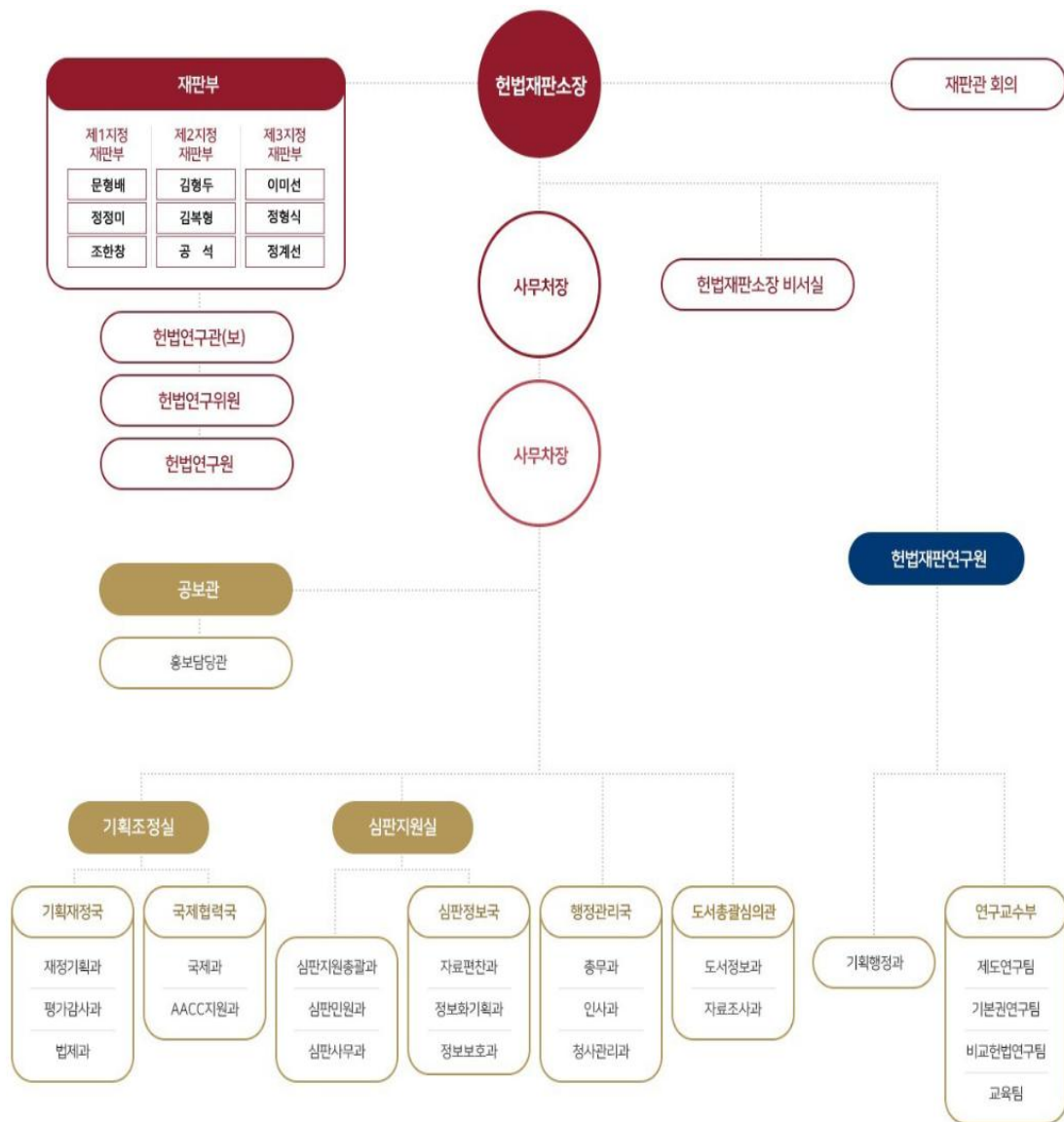
문 의 처
02)6788-5058

참고 1

헌법재판소 조직 및 정·현원 현황

□ 헌법재판소 조직도

(2025. 2. 3. 기준)



□ 헌법재판소 정원 및 현원 현황

(2025. 2. 4. 현재, 단위: 명)

구 분	정 원 (A)	현 원 (B)	과부족 (B-A)
총 계	356	347	△9
정 무 직	11	10	△1
특 정 직	68	70	2
특정직·일반직	12	7	△5
별 정 직	2	0	△2
일 반 직	263	260	△3

* 자료: 헌법재판소

참고 2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리											미 제	
		계	전 년 미 제	금 년 접 수	계	결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2014	합계	2,712	743	1,969	1,888	11	15	3		31	104	151	1,550		23	824	
	위헌법률	64	38	26	14	3	1	3			6		1			50	
	정당해산	1	1		1					1							
	권한쟁의	5	4	1	2								1		1	3	
	헌법소원	계	2,642	700	1,942	1,871	8	14			30	98	151	1,548		22	771
		§68①	1,808	368	1,440	1,368	3	11			30		151	1,155		18	440
		§68②	834	332	502	503	5	3				98		393		4	331
2015	합계	2,683	824	1,859	1,937	47	15			48	176	203	1,421	1	26	746	
	위헌법률	87	50	37	44	21	1				20		2			43	
	정당해산	1		1												1	
	권한쟁의	11	3	8	2					1			1			9	
	헌법소원	계	2,584	771	1,813	1,891	26	14			47	156	203	1,418	1	26	693
		§68①	1,765	440	1,325	1,375	6	10			47		203	1,090	1	18	390
		§68②	819	331	488	516	20	4				156		328		8	303
2016	합계	2,697	746	1,951	1,976	33	9	1		58	179	214	1,418	3	61	721	
	위헌법률	63	43	20	27	12	2				4		5		4	36	
	탄핵	1		1												1	
	정당해산	1	1		1								1				
	권한쟁의	18	9	9	5								3		2	13	
	헌법소원	계	2,614	693	1,921	1,943	21	7	1		58	175	214	1,409	3	55	671
		§68①	1,769	390	1,379	1,373	17	2	1		58		214	1,050	2	29	396
		§68②	845	303	542	570	4	5				175		359	1	26	275

구 분		접수			처리											미 제
		계	전 년 미 제	금 년 접 수	계	결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2017	합계	3,347	721	2,626	2,425	4	1			38	116	177	2,064		25	922
	위헌법률	71	36	35	11	1					10					60
	탄핵	1	1		1					1						
	권한쟁의	15	13	2	2								2			13
	헌법소원	3,260	671	2,589	2,411	3	1			37	106	177	2,062		25	849
	§68①	2,383	396	1,987	1,873	1	1			37		177	1,633		24	510
	§68②	877	275	602	538	2					106		429		1	339
2018	합계	3,349	922	2,427	2,447	57	59			52	108	271	1,850		50	902
	위헌법률	77	60	17	39	8	18				10		3			38
	권한쟁의	15	13	2	5								2		3	10
	헌법소원	3,257	849	2,408	2,403	49	41			52	98	271	1,845		47	854
	§68①	2,329	510	1,819	1,824	5	10			52		271	1,441		45	505
	§68②	928	339	589	579	44	31				98		404		2	349
2019	합계	3,632	902	2,730	2,519	8	7			34	142	206	2,076		46	1,113
	위헌법률	69	38	31	18	5	1				11		1			51
	권한쟁의	16	10	6	5					2		2	1			11
	헌법소원	3,547	854	2,693	2,496	3	6			32	131	204	2,074		46	1,051
	§68①	2,567	505	2,062	1,946	3	4			32		204	1,663		40	621
2020	§68②	980	349	631	550		2				131		411		6	430
	합계	4,354	1,113	3,241	3,042	10	7			64	162	230	2,515		54	1,312
	위헌법률	71	51	20	20	7	4				8				1	51
	권한쟁의	16	11	5	11							5	6			5
	헌법소원	4,267	1,051	3,216	3,011	3	3			64	154	225	2,509		53	1,256
2020	§68①	3,093	621	2,472	2,283	1	2			64		225	1,946		45	810
	§68②	1,174	430	744	728	2	1				154		563		8	446

구 분		접수			처리											미 제
		계	전 년 미 제	금 년 접 수	계	결정									취 하	
						위 헌	헌 법 불 합 치	한 정 위 헌	한 정 합 헌	인 용	합 헌	기 각	각 하	기 타		
2021	합계	4,139	1,312	2,827	2,621	15	4			46	126	217	2,161		52	1,518
	위헌법률 탄핵	89	51	38	19	6	2				9		2			70
	권한쟁의	1		1	1								1			
	헌법소원	7	5	2	1							1				6
	계	4,042	1,256	2,786	2,600	9	2			46	117	216	2,158		52	1,442
2022	§68①	3,011	810	2,201	2,105	6	1			46		216	1,791		45	906
	§68②	1,031	446	585	495	3	1				117		367		7	536
	합계	4,347	1,518	2,829	2,675	26	30			30	113	196	2,241		39	1,672
2023	위헌법률 탄핵	113	70	43	37	17	8				7		2		3	76
	권한쟁의	11	6	5	4					1		1	2			7
	헌법소원	4,223	1,442	2,781	2,634	9	22			29	106	195	2,237		36	1,589
	계	3,228	906	2,322	2,208	5	11			29	1	195	1,935		32	1,020
	§68②	995	536	459	426	4	11				105		302		4	569
2024	합계	4,263	1,672	2,591	2,659	38	14			50	220	253	2,042		42	1,604
	위헌법률 탄핵	101	76	25	48	25	7				11		2		3	53
	권한쟁의	4		4	1							1				3
	헌법소원	17	7	10	8					2		2	4			9
	계	4,141	1,589	2,552	2,602	13	7			48	209	250	2,036		39	1,539
2025	§68①	2,955	1,020	1,935	1,999	3	5			48	6	250	1,659		28	956
	§68②	1,186	569	617	603	10	2				203		377		11	583
	합계	4,126	1,604	2,522	2,725	47	15			44	217	339	2,021	2	40	1,401
	위헌법률 탄핵	71	53	18	28	14	5				7		2			43
	권한쟁의	12	3	9	2							2				10
2026	헌법소원	18	9	9	3					1			1	1		15
	계	4,025	1,539	2,486	2,692	33	10			43	210	337	2,018	1	40	1,333
	§68①	2,744	956	1,788	1,925	5	4			43	9	337	1,497		30	819
2027	§68②	1,281	583	698	767	28	6				201		521	1	10	514

자료: 헌법재판소

참고 3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유형별 서면·전자접수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 헌가사건 (위헌법률심판)					
－ 서면 접수	20	38	43	25	18
－ 전자 접수	－	－	－	－	－
－ 전자접수율	0%	0%	0%	0%	0%
○ 헌나사건 (탄핵사건)					
－ 서면 접수	－	1	－	4	9
－ 전자 접수	－	－	－	－	－
－ 전자접수율	－	0%	－	0%	0%
○ 헌다사건 (정당해산 심판사건)					
－ 서면 접수	－	－	－	－	－
－ 전자 접수	－	－	－	－	－
－ 전자접수율	－	－	－	－	－
○ 헌라사건 (권한쟁의심판)					
－ 서면 접수	3	－	1	－	4
－ 전자 접수	2	2	4	10	5
－ 전자접수율	40%	100%	80%	100%	55.6%
○ 헌마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서면 접수	1,262	1,220	1,161	1,030	1,081
－ 전자 접수	1,210	981	1,161	905	707
－ 전자접수율	48.9%	44.6%	50%	46.8%	39.5%
○ 헌바사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서면 접수	295	236	167	204	237
－ 전자 접수	449	349	292	413	461
－ 전자접수율	60.3%	59.7%	63.6%	66.9%	66%

자료: 헌법재판소